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고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,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, 광역교통운영국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8”을 “6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7”을 “6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4”를 “65”로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2조(평가대상 조직) ① 「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 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 표 2와 같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8</u>	<u>69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7</u>	<u>68</u>	+1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4</u>	<u>65</u>	+1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0